
입 법 정 보

2017-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5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6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6
6.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8.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9.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10.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8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1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9
14.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10
15.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11
16.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3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5
2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15
22.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16
2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7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2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7
2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9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9
28.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0
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3
3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23
3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36.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3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5
3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6
4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4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7
4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4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28
4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45.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9
4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0
47.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0
4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1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1
5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1
5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4
56.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4
5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35
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7
6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38
6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38
6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38

64.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보훈처)	39
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39
6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0
68.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0
6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0
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1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1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42
6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2
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2
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3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3
7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4
7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5
7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45
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5
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6
7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6
77.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6
7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7
7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8
8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8
8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8
8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9
8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49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9
8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0
8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0
87.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51
8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52
8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2
9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53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1. 27.
-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법률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개선하고 토사채취신고 등의 간주제를 도입하며 거짓 신고에 따른 행위 중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 등 지정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를 위한 심의는 거치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 나. 구역 등의 지정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받는 등 주된 인·허가의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5제1항 후단 개정)
- 다.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안 제25조제3항)
- 라. 토석채취허가 기준 개정과 일관되도록 채석신고의 장비기준 예외 규정 중 골재채취업 등록 부분을 삭제(안 제30조제5항 단서 개정)
-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 신고 또는 채석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기간 동안 채취의 행위 중지를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단서 개정)
-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착오로 지정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5제1항제1호 개정)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에 따른 “치료보호” 정의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외에 ‘통원치료’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1. 9.
-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 일반직 정원(4급 또는 5급) 중 2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작성하는 서식의 작성 항목 일부를 삭제하여 신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중 대상주택의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 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를 삭제함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1. 14.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기업고충민원팀·운전심판팀을 설치하고 각 팀별 소관 업무를 정하며, 의도적 절감 노력에 따른 예산을 활용하여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협력담당관을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하고 보임 규정을 마련하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8급 및 9급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직제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

비하려는 것임

6.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은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편관서와 이용자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제 특급우편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폐지 하려는 것임.

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정사업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확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항, 제30조제10항 신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장 또는 직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

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호봉 확정 시 민간전문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안 별표 2)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의 확정 시 해당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8.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우편업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우편업무에 준등기취급을 신설하고,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영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4년마다 만국우편연합(UPU) 총회에서 결정되어 시행되는 만국우편협약 내용 중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제우편 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협약의 조문순서와 같은 순서로 반영하고 그동안 개정된 국내 우편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국민 안내를 위해 세부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규정은 고시로 전환하고 국제우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 종포 도검 회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11. 6. • 마감일자 : 2017. 12. 18.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 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신상관계(신체사항), 학력사항 등의 항목을 서식에서 제외하여 현행 인사기록 서식을 개선·보완하고, 사망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27.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군·자치구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50개 미만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상점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1. 14.

-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11. 공포·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14.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4654호, 2017.3.21.)됨에 따라 면허시험의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방법, 합격증 교부기관 등 기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등 가축개량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안 제6조)

나. 수정사 시험 공고, 합격증 교부 및 시험위원회 구성 주체 등에 시행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을 추가(안 제16조제1항, 2항, 5항 및 제18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다.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1)

라.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27조의4)

마.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출하기록부 기록·비치 보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안 제30조 및 별표 7)

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목을 추가(안 제36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3의3)

사.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안 제37조의3제2항제3호, 안 제37조의4제3호)

15.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시설 등 사육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기간 등 처분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나·2))

라.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

나)(10) 및 제1호가목4)다)(9))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바.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사.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제4호)

16.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1. 28.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6.12.27)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26.~11.7.) 진행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18.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신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3, 제33조, 제38조의15, 별표4)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시보임용 면제제도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24조)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안 제14조, 제22조, 제34조)

금품·향응, 성관련 비위자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1의4, 제32조, 제5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시 평정방법을 명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채시험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하려는 것임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1. 27.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군·자치구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50개 미만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상점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상점가 기준 완화 및 요건 명확화(안 제5조)

- 1)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또는 30개 점포로 차등 적용한 것을 국정과제에 따라 30개 점포로 일원화하여 완화함.
- 2) 법령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소매점포의 비율과 건물 수, 제외 대상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1. 14.
-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11. 공포·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나.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

2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4654호, 2017.3.21.)됨에 따라 면허시험의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방법, 합격증 교부기관 등 기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등 가축개량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2.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18.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시설 등 사육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기간 등 처분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 나.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4호)
- 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나)·2))
- 라.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나)(10) 및 제1호가목4)다)(9))
-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 바.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 사.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제4호)

23.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7. • 마감일자 : 2017. 12. 8.
-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1. 28.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6.12.27)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9.26.~11.7.) 진행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안 제50조의3)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함
-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환경부령 제583호 부칙 제7조)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가운데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2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18.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신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3, 제33조, 제38조의15, 별표4)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시보임용 면제제도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24조)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안 제14조, 제22조, 제34조)
금품·향응, 성관련 비위자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1의4, 제32조, 제5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시 평정방법을 명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채시험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하려는 것임

2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18.

- 제3자가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촉장 서류의 명칭을 독촉장 서식 우편물 외부 표시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독촉 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증가산금 등으로 변경된 체납액을 안내받지 못해 발생했던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7.

- 법률에서 위임한 질문·검사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설된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에 따른 친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 나.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5조)

28.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7.
- 인사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방안 필요
- 가. 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

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18.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고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 제12조제1항 중 보호시설에만 해당하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의 경우는 이미 동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요건으로서 ‘시설의 종류에 따른 정원 규모별 연면적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동 평가기준으로 실익이 없는 바, 동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보호시설의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1. 28.
- 가. 세입·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 정보(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조항 신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절차적 사항을 규정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부는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8. • 마감일자 : 2017. 12. 18.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937호,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여야 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이전 지역인재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5)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하고, 채용비율은 2018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30%를 적용함

나.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3항)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연구직렬 채용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수가 지역인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를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 시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수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급여신청 시 제시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시설 대표자의 행정적 법적책임 부담을 명시하고, 복지용구급여 품목에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 수정

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가’ 호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 보완서류의 제출 대상자를 현행 ‘5등급 예상자’에서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로 문구수정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삭제(안 제4조1항)

수가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5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

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1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기관에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복지용구 항목(요실금 팬티)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중 ‘복지용구’ 항목에 신규 품목인 ‘요실금 팬티’ 신설

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 요양기관이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문제, 수가적용기준일, 인정유효기간 항목을 추가
- 사. 급여계약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 2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급여제공계획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 제고
- 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요양제공자의 주민번호·실 거주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요양비 신청시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개선
- 자. 기관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적·법적책임 부담 문구를 추가하여 기관대표자의 편법·부당영업 행위를 방지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7.
-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등급판정기준과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 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3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공동연구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및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도내 주소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시·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등록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13년 이후 황사 빈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로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원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건설기계 오염원 배출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엔진 도입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 적용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타이어, 번호등, 제동등 및 도장 관련 기준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기계 주요 부품의 무단 해체 및 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17.1.17, ' 17.8.9)됨에 따라 해체금지대상 건설 기계장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시설기준 완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 제시·매도신고 간소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위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 폐기 시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적으로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3제3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 시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선택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안 제37조제3항)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

3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9. • 마감일자 : 2017. 12. 19.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4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1. 30.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방식을 개선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의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 제14조, 제27조의2)
 - 1) 현재 주민의 ‘직접 연서’ 방식으로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서명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조례 제·개폐 청구방식을 도입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또는 감사청구 관련 업무 처리시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

1)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의 통일적 적용 필요.

2) 원격지 출장 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미비점 보완.

다.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한 사유 발생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4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7.

○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산정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간 배분비율(75%:25%)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한정(시행령 별표2(측정단위의 산정 기준))

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특례인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3년 연장(시행령 부칙(제26328호, 2015.6.22.) 제2조)

4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2017. 9. 13. 개최)에서 확정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광산내 안전감독자에 대한 직무수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감독자가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포함시키

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1. 30.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 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4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자동차제작자등이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을 과다표시한 경우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개정,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번

호판과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며, 중고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 개선(안 제3조제4호)

앞 번호판은 영치가 용이하도록 볼트로만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단한 도구로 탈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결방식을 확대함.

나. 외부장치용 번호판 양도 양수 허용(안 제5조의2제5항제3호)

외부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에 양도·양수인이 외부번호판을 승계하기로 합의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함.

다. 시정조치의 면제 부분을 경제적 보상으로 수정(안 제41조의2)

자동차관리법에서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을 과다표시한 경우 시정조치 면제조항이 경제적 보상으로 수정됨에 따라, 시정조치 면제를 위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통지장법 등을 정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제적 보상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경제적 보상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규정 마련(안 제43조)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서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시정조치와 유사하게 경제적 보상의 진행시 경제적 보상율을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통합(안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인이 계약의 제3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함으로써 매수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매매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45.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이 병역이행 확인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군 경력 증명서’의 경우 병역이행 확인과 함

게 군 복무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전역 시 기존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한 군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4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7.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 및 교육배경이 다양하나, 학령기 학생이 절대 다수인 일반중·고와 동일하게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은 일반 중·고의 2배가 넘는 방송중·고의 학업중단율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중·고의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 가. 학습경험 인정 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기타 학습경험 인정 범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습경험 인정 범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포함

나. 수업연한 자율화(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1)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47.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4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

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2. 20.
-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중복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개산 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

5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10. • 마감일자 : 2017. 11. 17.
-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9개 고용센터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고용센터를 정

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11.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자산 운용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5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3. • 마감일자 : 2017. 12. 26.
-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추가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3. • 마감일자 : 2017. 12. 26.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 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3. • 마감일자 : 2017. 12. 26.

- 뱅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 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뱅형 화물자동차 신고운임제 도입(안 제4조제3호 신설)
승객의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당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뱅형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 나. 중대한 교통사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안 별표 1 제12호, 별표 4 제12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 인원에 따라서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을 5일에서 60일을 10일에서 90일로 하고, 운행차량 감차조치 처분의 경우에도 기존 1대에서 2대를 2대에서 4대를 감차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 다.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7호의2 및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및 제4호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의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
라.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위반시 처분사항을 별표에서 삭제(현행 별표 1 제7호의3 삭제)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3. • 마감일자 : 2017. 12. 4.
- 11.3 대책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1항 신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14. • 마감일자 : 2017. 12. 4.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56.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4. • 마감일자 : 2017. 12. 26.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5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14. • 마감일자 : 2017. 12. 26.

-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다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26.

-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의 한계와 불이익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발생한 경우 제보 절차 및 제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사건 및 소청사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공직 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며,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안 제57조)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

- 나. 고충처리 대상 확대 및 처리절차 개선(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57조 단서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 이행거부 등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상담신청 또는 고충심

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상담과 고충심사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17조의2 신설)

인사행정에 대한 상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

라.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2조제3항 신설)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및 재심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심사 사건의 관할을 조정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의 의결정족수기준을 강화함.

마.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안 제19조의3)

정부인사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후보자 외에 민간분야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시 접근성을 강화함.

바.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안 제26조의6 신설)

공직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원칙을 명시함.

사.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삭제(안 제71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

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26.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의사표시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신청서를 취합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행정업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26.

○ 가. 담배판매 촉진 행위 규제(안 제9조의6 신설, 안 제34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담배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금지·제한 조치 위반자에는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제재 조치 대상인 담배판매 촉진 행위는 아래와 같음.

1. 담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소비자에게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4에 의한 부분은 「담배사업법」 조항을 따른다.

2.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3. 각종 담배제품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나.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 「혈액관리법」 등 보건교육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담보 제공요구의 제외 및 부담금 충당 요건 명시(안 제23조의2)

담배부담금 담보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일정한 요건 충족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제조사 등에 대해 담배부담금 담보물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거나 담배제조사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

6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26.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 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영업장내 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6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26.
-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6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1. 30.
- 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

21조 제3항)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64.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1. 15. • 마감일자 : 2017. 12. 5.

-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보존·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6. • 마감일자 : 2017. 12. 26.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련 신고(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등)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16. • 마감일자 : 2017. 12. 26.

- 군수품 규격의 제·개정 및 목록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활용 근거 마련하고,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법 운영상 발견된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6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12.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68.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7.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의성이 감소한 각종 산정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6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7.
-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중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인상
유연탄화력 지원금 지원 단가 : 0.15원/kWh → 0.18원/kWh

6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7.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려는 것임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27.

-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나.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으로 정함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

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27.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기능을 보완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6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17. • 마감일자 : 2017. 12. 27.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됨에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 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자 함.

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20. • 마감일자 : 2017. 12. 14.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20. • 마감일자 : 2017. 12. 4.
- 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제품의 자우너순환성 평가 및 대책 삭제 등(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 나. 재활용센터의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15조의2, 제41조)
- 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안 제48조)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20. • 마감일자 : 2017. 1. 2.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생산공정, 사용량, 배출량, 처리시설의 설치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 배출량, 자료 제출기한 등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나.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1) 배출량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배출량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함.

7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20. • 마감일자 : 2017. 1. 2.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0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한강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1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7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11. 20. • 마감일자 : 2017. 1. 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7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1. • 마감일자 : 2017. 12. 7.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안 제6조)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현행 20만원 미만 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1. • 마감일자 : 2017. 12. 1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

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1. • 마감일자 : 2017. 12. 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7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21. • 마감일자 : 2017. 12. 1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77.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21. • 마감일자 : 2017. 1. 2.
-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

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

7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22.
- 마감일자 : 2017. 12. 15.

○ 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개정

처리기간 9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7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8년 2월 1일까지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의제하는 조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8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1. 30.

- 환경부 소속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표현 수정 등 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8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8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극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선박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나.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률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선박소유자는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경우 배출률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8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2. 4.
-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 비제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성과팀을 신설하며 이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고,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을(본부 7명)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효율성을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본부 및 소속기관(통계교육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일자리 전담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
-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전담실 번호를 적고, 각 실별 시설 현황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 수정

8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가.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제도개선(안 별표4)

치매전담실(정원 12명)을 총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안 별표4)

현재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침실 1실 정원을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제도개선(안 별표9)

현재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으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실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치매전문교육 실시범위 명확화(안 별표4, 별표9)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함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호 서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8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1. 23. • 마감일자 : 2017. 1. 2.

○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용자를 위해 신청하는 용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87.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11. 24.
- 마감일자 : 2017. 1. 3.

○ 가. 중앙고충심사위에 제도 총괄 기능부여 (안 제3조의7)

-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괄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성비를 규정하여 심사 공정성 전문성 확보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확대하고, 균등한 성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역할 구체화 (안 제3조의5)

-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를 지정 공람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관리책임 강화

라. 심사출석 및 진술권한을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여(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고충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종류 구체화 (안 제10조)

- 심사결정 종류를 시정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불합리한 고충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충심사 결과의 처리방법 구체화 (안 제12조)

- ‘마’ 항 개정에 따라 시정요청 절차,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처분청 등의 처리결과 또는 불이행사유 통보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사. 그 밖에 제도운영 현실과 괴리되는 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7조)

-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문구 삭제
- 심사기간 연장 시 설치기관 장의 승인 불요

8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24. • 마감일자 : 2017. 1. 5.
-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8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24. • 마감일자 : 2017. 1. 4.
- 가. 전년도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의2)
- 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정비(안 제3조의3)
 - 1) 저 연금급여 방지를 위해 2012년도에 신설된 직종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으로 함
 -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임금, 물가,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다. 미납금·환수금의 연체이자 및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안 제25조, 제72조의2)
 - 1) 미납금·환수금 및 부담금 연체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 금리와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 평균액 중 높은 금리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로 완화함
- 라.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정비
 - 1)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12.20.)에 따라 법률 인용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2) 「사립학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5.29.)에 따라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사무직원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연금법상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원으로 통일하여 정비함(안 제53조의2)

3) 교직원의 신분변동 및 전산관리 사항 중 전입의 경우 전입한 기관에서 신고하고, 승진 및 강임의 경우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함(안 제75조, 제89조)

9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1. 24. • 마감일자 : 2017. 12. 1.

○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절감 재원으로 신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정원(행정서기보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